

청주지방법원 2021. 2. 18 선고 2020나1331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청주지방법원 2021. 2. 18 선고 2020나13312 판결

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. 6. 3 선고 2019가단24011 판결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울림

담당변호사 김경목, 윤성식, 김진주

피고, 항소인 주식회사 B

변론 종결 2021. 1. 28

판결선 고 2021. 2. 18

제1심 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. 6. 3. 선고 2019가단24011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주위적으로, 피고와 C 사이에 충주시 D 임야 36,752m²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에 관하여 2018. 7. 23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
피고는 C에게 이 사건 토지에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. 7. 25. 접수 제330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나. 예비적으로,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.7. 25. 접수 제330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'라 한다)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

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.

이에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 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재판장 판사 류연중 판사 이성기 판사 오태환